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19가합5323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5. 4 선고 2021나20239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19가합532361 판결

전문

원 고 1. 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법무법인(유한) B

2. C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

피 고 1. D

2. E

3.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정재하

4. G

5.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윤희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D과 소외 I 사이에 채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10억 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8. 5. 2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소외 I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주식회사 J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가. 피고 E과 소외 I 사이에 채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8. 5. 2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소외 I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주식회사 J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가. 피고 F과 소외 I 사이에 채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13억 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8. 5. 1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은 소외 I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주식회사 J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4. 가. 피고 G와 소외 I 사이에 채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6억 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8. 5. 1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G은 소외 I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주식회사 J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5. 가. 피고 H와 소외 I 사이에 채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6억 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8. 5. 1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H는 소외 I에게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주식회사 J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소외 I의 아버지로 치매, 양극성 장애 등으로 2014. 8. 5. 성년후견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8. 10. 원고 A의 성년후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B과 K회계법인이 변경, 선임되었다.

법무법인(유한) B은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9. 5. 8. 이를 허가하였다.

나. 원고 A은 2018. 5.경 및 현재 아들인 위 I에 대하여 아래 내역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표1] 원고 A의 구상금 채권 내역

순번	대위변제일	금액(원)	내역
1	2014. 7. 2.	27,004,929,604	I의 L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위해 담보제공된 원고 A의 예금에 대하여 L은행이 질권을 실행하여 I의 대출원리금 채무에 변제충당
2	2018. 12. 11.	8,313,040,645	원고 A 소유 부동산(M 건물 N, O, P동)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I의 L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대위변제
3	2019. 5. 2.	27,877,663,014	원고 A 소유 부동산(Q빌딩)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I의 L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대위변제
		9,635,136,986	원고 A 소유 부동산(R빌딩)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I의 L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대위

			변제
	합계	72,830,770,249	

다. 원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I이 그 일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으로 I과 소위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2018. 12. 31. 기준 I에 대하여 26,319,372,048원(2018. 1. 1. 기준 25,764,372,048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8. 5.경 I과 사이에, 피고들이 I의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각 일부(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를 피고들에 대한 I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내역

피고	계약체결일	채권양도금액	비고
D	2018. 5. 23.	10억 원	갑 제7호증의 1, 2
E	2018. 5. 23.	3억 원	갑 제8호증의 1, 2
F	2018. 5. 10.	13억 원	갑 제9호증의 1, 2
G	2018. 5. 11.	6억 원	갑 제10호증의 1, 2
H	2018. 5. 16.	6억 원	갑 제11호증의 1, 2

마.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된 2018. 5.경 I이 보유한 적극재산 내역 중 부동산 부분의 총 가액은 7,720,216,585원이고(I은 이 밖에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J에 대한 대여금 채권, S 주식회사 등에 대한 주식을 아울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I의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I의 소극재산 내역

순번	채권자	채권액(원)	비고
1	T은행	200,828,492	갑 제28호증
	U은행	3,537,706,658	
	L은행	57,339,590,382	

	중부세무서	52,635,090	
	강남세무서	488,208,130	
	평창군수	256,060	
	V(원금)	2,764,749,908	
	V(지연손해금)	2,273,911,893	
	합계	66,657,886,613	
2	S	41,827,606,549	갑 제15호증(원금 및 이자 기준)
3	원고 A	27,004,929,604	갑 제27호증(원금 기준)
총 합계		135,490,422,76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 27, 28호증, 을마 제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 A은 I에 대하여 약 728억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C은 I에 대하여 약 26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선택적으로,

가)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체결은 채무면탈의 의도로 I과 피고들이 통정하여 행한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I은 현재 무자력이며, 그럼에도 I은 위 가장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자대위권으로써 I의 피고들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고,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을 I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들의 채권이 허위 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I은 무자력이었음에도 I은 일부의 채권자들인 피고들에게 각각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당시 I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 I이 무자력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I과 통모한 바도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은 가장행위나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I과 피고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체결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및 양도통지서의 문언 및 형식이 동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체결은 I과 피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은 우선, 피고들이 주장하는 I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나,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 3, 4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 을마 제1 내지 6,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 G, H와 I 사이에 각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금액에 상응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서(명칭 불문) 및 그에 따른 금원의 입금 내역이 인정되고, 피고 F의 경우 대여금 채권 3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 및 그 일부의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 인정되며, 피고 E의 경우에도 그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액에 일치하는 금원의 입금 내역 및 변제 내역이 각각 인정된다. 여기에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등 참조), I과 피고들 사이에 금전대여 외에 다른 거래관계 등이 특별히 확인되는 내역은 없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들이 I에 대하여 각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4] 피고들의 각 채권 및 이 사건 채권양수 내역(2018. 5.경 기준)

피고	대여일(채권발생일)	채권금액(원금)	잔존 채권액	채권양수일	채권양도금액
D	2018. 4. 10.	10억 원	10억 원	2018. 5. 23.	10억 원
E	2016. 8. 4.	2억 5,000만 원	3억 원	2018. 5. 23.	3억 원
	2016. 8. 8.	2억 5,000만 원			
F	2014. 11. 12.	30억 원	약 25억 원	2018. 5. 10.	13억 원
G	2018. 4. 20.	6억 원	6억 원	2018. 5. 11.	6억 원
H	2017. 2. 24.	4억 원	약 7억 원	2018. 5. 16.	6억 원
	2017. 4. 11.	1억 3,000만 원			
	2017. 4. 20.	1억 원			
	2017. 4. 24.	2억 원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여러 의혹 사항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채권의 허위성에 관한 주장 외에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피고들과 I 사이의 통모 사실을 별도로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원고들은 피고 D의 경우,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이후 4억 원을 변제받은 것을 두고 이를 그 양도의 허위성에 관한 사정으로 지적하는 듯도 하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닌바¹⁾,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 D 부분의 채권양도의 허위성을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체결이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I의 재산 상태는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I은 일부 채권자들인 피고들에게 각각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2018. 5.경 당시 I의 소극재산은 합계 약 1,350억 원에 이르는데, 앞서 본 [표3] 기재 순번 1의 채무 약 666억 원 중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L은행에 대한 채무 약 573억 원, U은행에 대한 채무 약 35억 원이 모두 원고 A이 물상보증한 채무들로 이후 원고 A의 I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전환되었고, [표3] 기재 순번 2의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에 대한 약 418억 원의 채무는 I이 위 S의 대표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로 보이는데, 위 S의 주식 대부분은 원고 A이 보유하고 있으며, [표3] 기재 순번 3의 채무 역시 원고 A에 대한 채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당시 I의 소극재산을 구성하는 채권자들의 채권 내역이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인 I 자신과 밀접하고도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체결 시기가 근접하고 해당 계약서 및 그에 따른 양도통지문의 양식이 거의 유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들 사이에 별다른 인적관계가 확인되는 바 없고, 피고들에게 각각 양도된 채권금액이 3억 원에서 13억 원 남짓에 해당하여 I의 2018. 5.경 기준 적극재산의 규모(부동산 가액 기준 약 77억 원, 기타 J에 대한 채권 및 보유 주식 등) 및 원고들의 각 채권액 규모에 비할 때 그 비중이 그리 높지 않으며, 앞서 본 I의 적극재산 중 약 77억 원 상당은 모두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데다가 [표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양도된 이 사건 각 채권금액은 모두 피고들의 I에 대한 잔여 채권금액에 상응하거나 오히려 그에 미달되기도 하는바, 이 사건 각 채권 양도의 필요성이나 상당성도 인정되는 점, ③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I과 피고들 사이의 통모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I은 2013년경 기준으로 그 자산가치가 약 1,119억 원대로 평가된 바가 있고, 나아가 S의 대다수 주식을 비롯하여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이 사건에서 원고 A의 I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발생한 채권액만도 728억 원을 상회한다) 원고 A의 유일한 아들로써 I의 무자력 상태를 예측하거나 알기 어려웠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수긍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각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체결이 I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관용, 판사 이재욱, 판사 전훈자

1)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7575,2011다37582(반소) 판결 등 참조.